

# 집행위원회 규정

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

# 집행위원회 규정 [2012.12.11]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31 조, 제 32 조 및 제 32 조의 4 에 의하여 집행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권 한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정한 업무를 제외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구성

### 제 3 조 (구성)

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 결의로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### 제 4 조 (의장)

1. 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2.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고, 대표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다.

### 제 5 조 (위원 아닌 자의 출석 등)

의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시켜 의안 설명을 시키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6 조 (종 류)

1.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2. 정기위원회는 매월 4 짜주 수요일에 개최한다. 다만, 개최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며, 정기위원회일에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3.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#### 제 7 조 (소집권자)

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4 조 2 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른다.

#### 제 8 조 (소집절차)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12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# 제 9 조 (결의방법)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유·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2.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3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10 조 (질서유지)

위원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# 제 11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는 결의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결의사항 통지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#### 제 12 조 (긴급사항)

1.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.
2. 전항의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 13 조 (서면결의)

삭제

## 제 4 장 부의사항

### 제 14 조 (부의사항)

1.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2.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  - ①경영에 관한 사항
    - 1)경영계획 및 반기 결산보고서 승인
    - 2)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
    - 3)지점, 공장, 사무소 등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   - 4)기타 주요 경영현안
  - ②재무에 관한 사항
    - 1)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.5%미만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
    - 2)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.5%미만의 해외직접투자
    - 3)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.5%미만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
    - 4)차입 및 관련 한도 약정 (신규 및 연장)
    - 5)기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 또는 외부기관이 이사회에 준하는 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  - ③기타
    - 1)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
    - 2)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
    - 3)기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영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

## 제 5 장 기 타 사 항

### 제 15 조 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간사부서에 보관한다.
2. 의사록은 필요할 경우, 집행부서의 업무집행을 위해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다.

### 제 16 조 (간사)

1. 위원회의 간사는 재무담당으로 한다.
2.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### 제 17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부 칙 (1998.5.27)

제 1 조 이 규정은 1998 년 5 월 27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3.9)

제 1 조 이 규정은 2001 년 3 월 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12.11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2 년 12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